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알림

1. 혁신의료기기 지정 검토와 동시에 영양급여대상·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등의 통합검토를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정 신청을 받고 이 경우 적용대상, 절차·방법, 제출자료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「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아울러 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 > 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제개정고시등)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「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1부.
2. 「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고시 전문 1부. 끝.

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



수신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, 사단법인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, (사)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,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, 재단법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,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, 대한의사협회,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

주무관 **문지혜** 연구관 **김수연** 혁신진단기기 전결 2022. 10. 14.
정책과 과장 **김정미**

협조자

시행 혁신진단기기정책과-3889 (2022. 10. 17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3794 팩스번호 043-719-3796 / wisdom312@korea.kr / 대국민 공개